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 3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산업자원부 정 세 균
장 관

◎법률 제7869호

發明振興法 일부개정법률

發明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發明振興法”을 “발명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라 함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산업재산권진단”이라 함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등의 발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그 발명의 연구개발의 방향 또는 기술 도입의 추진방법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①정부는 발명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자 및 그 승계인
 2. 발명의 연구 또는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職務發明의 촉진”을 “직무발명의 활성화”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204호

관

부

2006. 3. 3. (금요일)

제8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은 경우에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및 지원시책) ①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승계여부의 통지)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종업원등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2조(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제13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시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상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출원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직무발명심의기구) ①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規程)의 제정·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종업원등과 사용자등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심의기구는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의 대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의3(직무발명관련 분쟁)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등 또는 종업원등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데이터베이스 및 전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1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중 “登錄抹消”를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抹消할 수

있다”를 “말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詐僞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의2의 제목“(특허정보지원센터)”를“(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지역별로 특허정보지원센터(이하 “지역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지역센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각각 “지역센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설, 전산장비, 인력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력 및 전산장비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며, 동조제7항중 “수익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를“(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등)”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지역정보지원센터의 등록말소”를 “지역센터의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 評價節次 기타”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시설·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중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제21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2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산업정책업무
를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차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發明振興會소속하에 特許
技術事業化 알선센터”를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3(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특허청장은 진단기관이 제1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단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제29조의6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1조의 제목, 동조제1항·제2항·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知的財産
權”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新知的財産權分野”
를 “신지식재산권분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의2중 “지역정보지원센터”를 “지역센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第12條”를 “제14조의4”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허정보지원센터”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유아교육법”을 “「유아교육법」”으로,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高等教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24조제2항제2호의3중 “技術移轉促進法”을 “「기술이전촉진법」”
으로 하며, 제26조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으로 하고, 제27조중 “調達事業에관한法律”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8조중 “租稅特例制限法”을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하고, 제29조제3항제5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産業發展法”을 “「산업발전법」”으로,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6항중 “民法”을 “「민법」”으로 하고, 제39조중 “刑法”을 “「형법」”
으로 하며, 제40조제5항중 “非訟事件節次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직무발명을 완성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효력의 적용례) 제29조의6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립된 조정의 조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특허정보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청장에게 등록된 특허정보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지식재산센터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특허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③다자안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第24條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장려보조금 교부를 위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구현하고,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분쟁 등을 소송 외 대체적 분쟁해결시스템을 통해 효과적·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직무발명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의 통합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